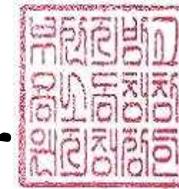


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지급결정 취소 및 반환, 지급제한 처분 공시송달 공고

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지급결정 취소 및 반환, 지급제한 처분 대상자에게 처분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을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23. 12. 14.

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장



1. 건 명 :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지급결정 취소 및 반환, 지급제한 처분 공시송달
2. 근 거 :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 제28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, 제27조제2항, 시행령 제12조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성 명	생년월일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 내용			송달불능 사유	주소
			처분 제목	처분사유	처분내용		
성**	87.5.25.	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지급결정 취소 및 반환, 지급제한 등 알림	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지급결정 취소 및 반환, 지급제한 등 알림	소득발생 미신고, 구직촉진수당 부정수급	- 구직촉진수당 지급결정 취소 및 반환 - 수급권 소멸 및 5년 참여 제한	폐문 부재	경남 창원시 진해구 (이하 생략)

4. 공고기간 : 2023.12.14.~2023.12.28.(15일간)
5. 기타사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창원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김미정(전화 055-239-5373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